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중년 퇴직자,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빈일자 리 해소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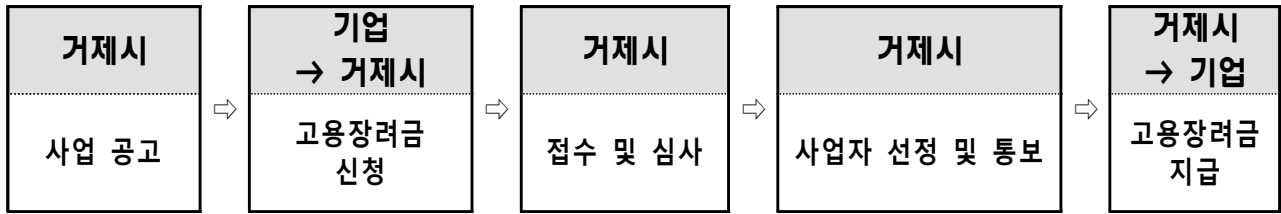
거 제 시 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명: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인원: 20명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주민등록상 거제시에 거주하는 50~64세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거제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제조업)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250만원
 - 지원조건
 - ①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② 5개월간 임금 지급 후
 - ③ 고용유지 상태에서 고용장려금 신청 시 사업자에게 지원
 - 지원한도

구 분	피보험자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신청일 기준)	5인 ~ 50인 미만	1명
	50인 이상	2명

2. 지원 절차



3. 참여 자격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일 기준 거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 명시된 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2025년 1월 1일 이후 5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급여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5개월 이상 근무(임금지급 필수)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인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 2.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4. 제 외 대 상

사업자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기업
2.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3. 소비·향락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 인력공급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
4.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4대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5. 공적 자금 투입 기관 및 기금 출연기관
6. 일부 제한 업종(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7. 2024년 참여기업 중,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증가 시에만 신청 가능

근로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자
5. 비상근 촉탁 근로자
6.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자

5.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5. 6. 2.(월) ~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제시청 본관 3층 조선지원과(계룡로 125)
- 이메일접수: ohj0613@korea.kr 접수 후 확인전화(☎055-639-4146)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식	비고
①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②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③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⑤-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4.12.31. 기준)		2024년도 참여 기업인 경우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4	
⑧ 월별 임금대장		
⑨ 임금 지급증빙서류	입금확인증/ 이체증명서	
⑩ 통장 사본(기업 명의)		
⑪ 출퇴근대장	* 전자식/수기식 구분없음	
⑫ 근로계약서 (근로자기준)		정규직 확인용
⑬ 주민등록등본 (근로자기준)		주민번호 전체 표시
⑭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기준)		
⑮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기준)		신규채용 여부 확인 (24. 1. ~ 현재)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구할 수 있음

6. 참여기업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선착순 및 자격요건, 결격사유, 법률위반사항 등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신청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7. 기타 사항

- 시군 및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자(사업자, 신중년 근로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배제함.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본 사업은 경상남도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시행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문 의 처: 거제시 조선평원과(☎055-639-4146)